

☎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삼구빌딩 7, 8층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87/전송(02)790-8911  
보험국장 이성민 [6574] 보험급여팀장 김선우 [6576] 팀원 이보근 [6587]/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813-10140호

시행일자 2021. 11. 23.

수 신 16개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전문학회장),  
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

참 조

제 목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(2021-281)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81호 (2021.11.22.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78호, 2021.11.12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, 이를 안내드립니다.

- 다 음 -

○ 주요 개정사항

-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 변경 등

○ 시행일 :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

붙임 : 복지부 고시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